

2021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상세(월별)내역 [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]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김국세	740408-*****

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		1월	2월	3월	4월	연납입액	소득공제 대상금액
사업자번호	계좌번호	5월	6월	7월	8월		
펀드명	가입일자	9월	10월	11월	12월		
NN주식회사		50,000	50,000	50,000	50,000	600,000	240,000
104-86-39742	028017*****	50,000	50,000	50,000	50,000		
AA투자신탁ClassC	2021-01-25	50,000	50,000	50,000	50,000		

1.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'15.12.31.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(최고 240만원)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(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)

※ 농어촌특별세 비과세

2. 가입요건 :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
※ 소득공제 배제 : ①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②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·이자·배당·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공제하지 아니함

일련번호 : 20220113-01450212



•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•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상세(월별)내역 [벤처기업투자신탁]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
■ 투자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국세	740408-*****

■ 투자금액 명세

(단위:원)

취급기관(사업자번호)		1월	2월	3월	4월	투자금액 계
납입연도	계좌번호	5월	6월	7월	8월	
투자신탁명		9월	10월	11월	12월	
KK농협 (226-11-83176)		10,000,000	0	0	0	
2021	130900*****	0	0	0	0	
A투자증권		0	0	0	0	

-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%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(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)

일련번호 : 20220113-0145021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상세(월별)내역 [벤처기업투자신탁]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
■ 투자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국세	740408-*****

■ 투자금액 명세

(단위:원)

취급기관(사업자번호)		1월	2월	3월	4월	투자금액 계
납입연도	계좌번호	5월	6월	7월	8월	
투자신탁명		9월	10월	11월	12월	
KK농협 (226-11-83176)		0	0	0	5,000,000	
2020	130900*****	0	0	0	0	
A투자증권		0	0	0	0	
KK농협 (226-11-83176)		0	0	1,000,000	0	1,000,000
2020	C2FD8C*****	0	0	0	0	
B투자증권		0	0	0	0	

-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%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(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)

일련번호 : 20220113-0145021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상세(월별)내역 [벤처기업투자신탁]

(조회기간 : 2021년 01 ~ 12월)

■ 투자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국세	740408-*****

■ 투자금액 명세

(단위:원)

취급기관(사업자번호)		1월	2월	3월	4월	투자금액 계
납입연도	계좌번호	5월	6월	7월	8월	
투자신탁명		9월	10월	11월	12월	
KK농협 (226-11-83176)		0	0	2,000,000	0	2,000,000
2019	130900*****	0	0	0	0	
A투자증권		0	0	0	0	
KK농협 (226-11-83176)		0	0	6,000,000	0	6,000,000
2019	C2FD8C*****	0	0	0	0	
B투자증권		0	0	0	0	

-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, 투자금액의 10%(종합소득 금액의 50%한도)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(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)

일련번호 : 20220113-0145021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